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9. 19(월)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47,709,131천원(일반 732,481,898천원 특별 15,227,23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747,709	693,262	622,602	58,654	12,006	54,447
일반회계		732,482	678,786	608,146	58,634	12,006	53,696
특별회계		15,227	14,476	14,456	20	0	751
	의료급여기금	803	636	636		-	16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1	291	-	-	351
	주차장	13,782	13,549	13,529	20	-	233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361,548,179	347,133,105	14,415,074	4.15 %
	복 지 정 책 과	40,896,291	38,754,343	2,141,948	5.53 %
	복 지 지 원 과	78,493,137	74,653,698	3,839,439	5.14 %
	어 르 신 장 애 인 과	144,221,602	140,112,623	4,108,979	2.93 %
	가 족 정 책 과	80,523,999	77,407,016	3,116,983	4.03 %
	아 동 청 소 년 과	17,413,150	16,205,425	1,207,725	7.45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18,549,095	16,836,706	1,712,389	10.17 %
	주 택 과	488,538	516,465	△27,927	△5.41 %
	안 전 도 시 과	1,151,953	1,175,629	△23,676	△2.01 %
	도 시 계 획 과	1,711,159	2,989,575	△1,278,416	△42.76 %
	건 축 과	14,629,068	11,575,960	3,053,108	26.37 %
	공 원 녹 지 과	568,377	579,077	△10,700	△1.85 %
문 화 환 경 국		60,640,957	60,195,459	445,498	0.74 %
	문 화 체 육 과	21,995,854	21,456,352	539,502	2.51 %
	청 소 행 정 과	36,301,305	36,468,973	△167,668	△0.46 %
	환 경 과	2,046,608	1,973,057	73,551	3.73 %
	부 동 산 정 보 과	297,190	297,077	113	0.04 %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43,095,587	40,908,503	2,187,084	5.35 %
	교 통 행 정 과	1,360,256	1,337,585	22,671	1.69 %
	주 차 관 리 과	18,781,806	18,548,568	233,238	1.26 %
	건 설 행 정 과	4,241,123	4,240,903	220	0.01 %
	도 로 과	11,974,009	10,564,188	1,409,821	13.35 %
	치 수 과	6,738,393	6,217,259	521,134	8.38 %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개 요	최종예산	기정액	2차 추경(안)
				15,227,233	14,476,053	751,180
1	복 지 원 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주요내용 -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 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642,392	291,400	350,992
2	복 지 원 과	인력운영비	◦ 주요내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0,325	102,005	18,320
3	복 지 원 과	의료급여 반환	◦ 주요내용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8,630	0	148,630
4	주 차 관 리 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구매	195,980	196,980	△ 1,000
5	주 차 관 리 과	기본경비	◦ 주요내용 - 급량비 및 출장여비	135,867	165,108	△ 29,241
6	주 차 관 리 과	반환금 기타	◦ 주요내용 - 시비보조금 반환금	264,337	858	263,479

5. 복지가족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 주요내용 - 금천복지재단 설립 기획 용역	36,556	14,556	22,000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 주요내용 - 전구민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감추경	10,378,600	12,006,600	△ 1,628,0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	◦ 주요내용 - 보훈회관 회의실 책상 의자 및 제습기 구매	140,291	131,791	8,500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종합 복지관 운영	◦ 주요내용 - 복지관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 및 경로식당 장비 교체	1,614,767	1,503,473	111,294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문화확산	◦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실제 소요액 반영	2,163,000	2,433,000	△ 270,000
아동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수당 감추경	30,000	31,386	△ 1,386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주요내용 - 건립 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감추경	1,350	373,004	△ 376,654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공간 임차료 및 조성비	192,100	0	192,100
아동생활 안전보험	◦ 주요내용 - 실 보험료 제외한 잔액 감추경	40,821	50,000	△ 9,179

6. 검토 의견

가.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사업 재정 확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안전예산 반영, 2021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등 반영하여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음.

-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은 6,226억 183만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586억 5,350만원과 제1회 추경 120억 660만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477억 91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7.85% 증가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가 536억 9,590만원 증액되어 7,324억 8,1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10만원이 증액되어 152억 2,720만원임.

나.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

-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 일반회계 144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15억 4,8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8.35%에 해당됨.
 -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당초 예산 6억 3,600만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690만원 증액되어 8억 300만원이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2억 9,140만원에서 공공원룸주택 용자금 지원으로 3억 5,090만원 증액되어 6억 4,230만원이 편성됨.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예산	기정액	2차 추경안
1	복지지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 원룸주택 보증금 용자 	642,392	291,400	350,992
2	복지지원과	인력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0,325	102,005	18,320
3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8,630	0	148,630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 복지정책과

기정액(387억 5,430만원)에서 금회 21억 4,190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금천복지재단 설립 용역 2,200만원이 증액 편성

2) 복지지원과

기정예산(746억 5,360만원)에서 금회 38억 3,94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자활지원사업 4억 9,450만원 증액

3) 어르신장애인과

기정예산(1,401억 1,120만원)에서 금회 41억 89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관 호우 피해 복구비 1억 1,120만원 증액

4) 가족정책과

기정예산(774억 700만원)에서 금회 31억 1,690만원 증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출산축하금 실제 소요액 조정으로 2억 7,000만원 감액

5)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162억 540만원)에서 금회 12억 77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 용역비 3억 7,660만원 감액

청소년 문화공간 임차료 1억 9,200만원 증액 편성

다. 검토의견

2022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주민 생활복지의 안정적 추진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안전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편성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